

검 토 보 고 서

의안 번호	제18호
----------	------

2019. 3. 21.

건명	논산시 연산 화악리의 오계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(의원발의)		
제안 및 제출자	박승용의원 외 7명	제안연월일	2019. 3. 6.
소관위원회	행정자치위원회	회부연월일	2019. 3. 6.

보 고 내 용

□ 제안이유

- 문화재청의 「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관리지침」이 일부 개정되어 관련된 「논산시 연산 화악리의 오계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개정하고 기타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가. 용어변경(안 제2조 ~ 제4조, 안 제10조)

- (주)자산농원 ⇒ (재)연산오계재단
- 대표이사 ⇒ 이사장
- 오계심의위원회 ⇒ 연산오계심의위원회

나. 운영비 지원사항 추가(안 제10조)

□ 검토의견

- 문화재청의 「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관리지침」이 일부 개정되어 관리지침에 부합하도록 관련된 「논산시 연산 화악리의 오계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개정하고 기타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